군유 행정재산
(평창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)
무상사용 동의안

의 안 번 호	32

제안연월일 : 2026. 9. .
제 안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평창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진부 당귀와 일천궁의 생산 체계 구축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서,

○ 군유 행정재산인 평창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그 사용료를 전액 면제(무상사용)하고자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제2의2호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○ 사업대상: 평창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

○ 관리주체: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원예특작팀

○ 수탁기관: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(이사장 임성원)

○ 위탁금액: 무상사용

○ 법적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(사용료 감면)

○ 위탁기간(연장): 2026. 11. ~ 2031. 11.(5년) ※ 당초: 2021. 11. ~ 2026. 11.

○ 위탁내용: 평창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・관리

○ 위탁시설: 평창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일체

나. 위탁시설 현황

○ 기본현황

- 소재지: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41-2번지
- 부지면적: 29,116㎡
- 건축규모: 건물 1동, 철골조, 건축면적 5,274.57㎡ / 연면적 5,274.57㎡
- 부대시설: 주차장, 폐수처리시설 50톤/일, 오수처리시설 12㎥/일, 화물용 승강기 1대, 조경시설

○ 용도 및 관리계획

구분	면적(㎡)	관리 및 운영 계획
합계	**5,274.57**	
전처리가공시설	1,566.84	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무상위탁 운영
저장시설	1,752.81	〃
하역시설	141.14	〃
검사시설	140.56	〃
사무시설	106.16	〃
설비시설	707.27	〃
공용시설	341.73	〃
전시홍보시설	118.76	〃
한약재 선별장	399.3	〃

다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사업비: 327,000천원(군비)

○ 산출내역

구분	내용	사업비(천원)
합계	-	327,000
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관리	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, 수탁금리비, 선별검수비	327,000

3. 운영계획 및 검토의견

○ **운영계획**

- 1층 전처리가공시설 외 8개 시설에 대하여 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관리함.

○ **검토의견(필요성)**

- 본 시설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진부 당귀와 일천궁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시장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거점 시설임.
-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재단법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에 따른 시장 경쟁력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통합 관리가 필요함.
- 이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전액 면제(무상사용)하고자 함.

4. 향후계획

○ 평창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위·수탁 재협약 체결: 2026. 11.

○ 평창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: 2026. 11. ~ 2031. 11.(5년)

5. 참고사항

○ 위치도 및 현장사진

지적도	위치도(위성사진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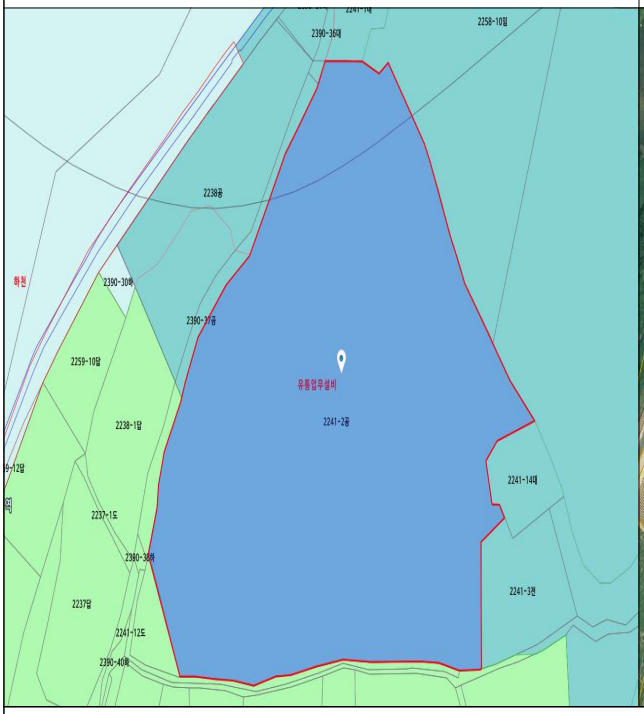	

현장사진



관계법령 발췌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2. ~ 3. 생략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**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7조(사용료 감면)

①~④생략

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
2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

2의2. **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**

□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

제5조(심의회의 업무)

① 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2. 삭제<2008.10.17.>
3.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
4. 삭제<2015.10.08.>
5.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 간 무상 이관
6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, 취득·처분에 관한 재심의(다만,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)
7.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
8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
9.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
10.~11. 생략